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9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 () 천재·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발생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폐업: 폐업증명원 6. 상해·질병: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상해·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